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8. 11. 29.>
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

•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허가번호
신축(허가사항 변경)	2017-청라관리과-신축허가-135
건축주	
주식회사 정어수파트너스	
대지위치	
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-3번지(C3-2-3블록)	
대지면적	
2,120.4㎡	
건축물명	주용도 업무시설(오피스텔), 근린생활시설
건축면적 1,047.95㎡	건폐율 49.42%
연면적 합계 23,375.71㎡	용적률 819.71%

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	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
1		23,375.71	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(변경)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20년 11월 23일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2종) 70g/㎡]